#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경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741

발의연월일: 2024. 8. 12.

발 의 자: 강경숙・황운하・조 국

이해민 • 박희승 • 임미애

정동영 · 김한규 · 백승아

김준형 · 김선민 · 민병덕

신장식 · 서왕진 · 박은정

의원(15인)

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다문화가족 자녀들은 외모·문화 등 차이로 인해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으며, 학교와 사회 적응이 쉽지 않은 실정임.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여 이들이 심리적 장벽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건실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함.

이에 시·도 교육감이 다문화가족 아동·청소년을 위한 심리·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겪는 심 리적·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, 향후 진로에 대해 명확한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함.

또한, 다문화가족 아동·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사회적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에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,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(안 제10조).

법률 제 호

#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 제목 중 "교육"을 "교육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프로그램"을 "프로그램 및 심리·진로 상담 프로그램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·청소년이 지역사회와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사회적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, 그 참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10조(아동・청소년 보육・교육 제10조(아동・청소년 보육・교육) ① (생략)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 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 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, 특별시 · 광역 시・특별자치시・도・특별자치 | 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 성원인 아동 · 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 -----<u>프로그</u>램 및 심리·진로 상담 프로그램-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. ③ (생략) ③ (현행과 같음)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 <신 설> 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 년이 지역사회와 긴밀한 유대 감을 형성하고 사회적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봉 사활동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, 그 참여에 필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<u>④</u> (생 략)

<u>⑤</u> (현행 제4항과 같음)